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 안내

대통령령 제19293호(2006.1.26)

1. 개정이유

수의사법이 개정(법률 제7546호, 2005. 5. 31. 공포, 2005. 12. 1. 시행)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과잉진료행위의 범위 등을 정하는 한편,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의 윤리관련 신설 제도(제 18조의 2신설, 제 20조의 2신설)

- (1) 수의사회는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업무의 적정과 수의사의 윤리확립을 도모하고, 법 제3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제시 등을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2) 「수의사법」에서 위임한 수의사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는 과잉진료행위의 범위를 불필요한 검사·투약 또는 수술 등을 하거나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를 요구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술하는 행위, 허위 또는 과대의 광고행위 등으로 정함(제20조의2 신설)

나. 진료대상 동물의 범위 확대(제2조)

- (1) 인수공통질병(人獸共通疾病)의 예방, 야생동물에 대한 적절한 진료 등을 위하여는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2)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는 동물의 범위에 사육하지 아니하는 동물도 포함되도록 함.
- (3) 야생동물도 수의사가 진료할 수 있게 됨으로써 인수공통질병의 예방·전파방지 및 동물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상설기구화(제4조)

- (1) 시험과목의 개편 및 문제은행식 출제방법 도입 등 수의사국가시험제도의 개선과 공정한 시험관리를 위하여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의 기능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2) 수의사국가시험을 실시할 때마다 구성하고 있는 수의사국가시험위원회를 상설기구로 하여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고, 국가시험제도 개선·운영, 출제위원 선정, 시험문제의 출제, 과목별배점 및 합격자사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함.
- (3) 수의사국가시험제도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어 수의사국가시험의 공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라. 수의사국가시험과목 조정(제9조 및 부칙 제1항·제2항)



- (1) 현행 시험과목은 1974년에 정하여진 후 1998년 수의학제의 6년제로의 개편 및 교과목 다양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여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음.
- (2) 시험과목을 현행 10개 이상의 과목에서 4개 분야별 과목으로 변경하고, 대학·학생 등의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2011년부터 시행하도록 함.
- (3) 시험과목을 교육과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수의학교육의 내실화와 수의인력의 질적 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됨.

마. 수의사 및 동물병원에 대한 지도·감독방법 보완(제20조)

- (1) 「수의사법」상 농림부장관 등은 수의사와 동물병원에 대하여 지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데도, 동법 시행령에 수의사에 대한 지도·명령의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2) 농림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동물병원 외에 수의사에 대하여도 시설·업무개선의 지도·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3) 연구기관·학교 등에 종사하는 수의사에 대하여도 필요한 지도·명령을 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구·교육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시험과목등)의 개정규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수의사법시행령 일부개정령 전문은 법제처 또는 대한수의사회 홈페이지 “회원공지사항”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수**